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0 발의연월일 : 2024. 11. 5.

발 의 자:전재수·허 영·추미애

위성곤 • 강유정 • 이학영

김재원 • 이기헌 • 민형배

채현일 • 박홍배 • 민홍철

강득구 · 서삼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			
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			
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u>20만원</u> 이하의 식사대	30만원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